

대전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나1242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익중

변 론 종 결 2021. 10. 27.

판 결 선 고 2021. 11. 17.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 10. 16. 선고 2020가단3077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16. 9. 12. 접수 제123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약어 포함)와 같으므로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2행 ‘E에’를 ‘C에’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3행 ‘F에’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16. 9. 12. 접수 제123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피고는 당심에서 피고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형인 G으로 하여금 매매대금의 지급 대신 F에 대한 C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고 추후 G에게 이를 모두 상환한 것으로, 당시 C의 신용상태를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가 사해행위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강조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은 1,500만 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자 형인 피고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결국 자금 마련을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C의 나이나 경력에 비추어 그 정도의 채무 변제도 어려워 친척들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한 것을 보면, 매매대금의 지급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해달라고 요청받았다는 피고로서도 C의 재정 및 신용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 10. G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 11. 8.까지 6회에 걸쳐 총 14,07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G이 F에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시점(2017. 3. 13.)으로부터 약 8개월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데다, 그 금액도 변제금액(1,5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이 사건 매매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C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금전으로 바꾼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에 따른 매매대금을 피고가 실제 부담하였는지에 따라 피고의 선의 인정여부가 좌우되지도 않는다.

나아가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9. 1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소외 회사가 C를 형사고소한 날로부터 불과 20일 뒤에 매매대금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점, ②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는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F에 대한 채무도 피고의 형인 G이 대신 변제하였으며 그 금액도 매매대금과 다른 점, ③ 채무독촉을 받으며 친척들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C이 어떠한 경위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음 없이 자력도 충분치 않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사건 부동산에 추가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을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별도로 대출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사정이나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반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경선, 판사 박세진, 판사 강지엽

목 록

충남 서천군 H 대 519㎡ 끝.

